

정 관

울산테크노파크정관

전부개정	2007.	7.	12.
일부개정	2008.	3.	18.
일부개정	2008.	12.	29.
일부개정	2009.	12.	23.
일부개정	2010.	2.	11.
일부개정	2011.	6.	23.
일부개정	2011.	12.	14.
전부개정	2012.	12.	26.
일부개정	2013.	12.	24.
전부개정	2015.	3.	27.
일부개정	2015.	12.	28.
일부개정	2017.	3.	29.
일부개정	2017.	8.	29.
일부개정	2018.	3.	27.
일부개정	2018.	8.	29.
일부개정	2019.	3.	27.
일부개정	2019.	7.	9.
일부개정	2020.	4.	29.
일부개정	2021.	3.	30.
일부개정	2021.	7.	26.
일부개정	2022.	3.	28.
일부개정	2022.	8.	18.
일부개정	2022.	12.	22.
일부개정	2023.	3.	29.
일부개정	2023.	12.	21.
일부개정	2024.	3.	29.
일부개정	2024.	12.	27.
일부개정	2025.	3.	26.
일부개정	2025.	12.	22.
일부개정	2026.	3.	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Ulsan Technopark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울산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연구소를 두어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5.12.28.>

제3조(사무소 및 부설기관 등) 법인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8.29.>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관리·지원 사업, 지역산업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사업 운영
3. 지역 내 기술연구 및 혁신역량 조사
4.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5.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6.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 장비 공동이용사업
7.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8. 연구소 등 지역의 연구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9. 수탁 연구개발용역사업
10. 창업보육,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의 획득·관리·지원,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문, 시험인증, 생산판매지원, 정보시스템구축, 애로조사 및 금융기관·지원기관 연계 등 기업지원사업
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 <개정 2015.12.28.> <개정 2021.7.26.>
12. 신·재생에너지 제품개발, 실증 지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생산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등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1.7.26.>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비상임 임원중 당연직 임원은 그 직에 따라 선임되며, 선임직 임원은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법인의 상근임원(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해야한다.

④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원이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출자기관이면서, 해당 법인에 출자출연한 울산광역시의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신설 2024.3.29.>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 라 한다)가 된다.

1. 이사장
2. 원장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업무 담당국장

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설 2018.8.29.>
 5. 울산광역시 담당국장 <호번호변경 2018.8.29.> <일부개정 2022.8.18.>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호번호변경 2018.8.29.> <일부개정 2022.8.18.>
 7.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호번호변경 2018.8.29.>
-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 라 한다)는 출연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비율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③ 선임직 이사는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8.29.>

제7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 사직을 승계한다.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⑤ 이사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울산광역시장 또는 최다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3.29.>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이사회 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원장의 궐위 시 또는 원장 인사 관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이 시도지사일 경우,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원장) ① 원장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고 직속부

서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청렴의무를 가지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진의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선임 후 원장 임기개시전까지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3.29.>

③ 원장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부개정 2020.4.29.> <일부개정 2022.8.18.>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04.29.> <일부개정 2022.8.18.>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04.29.> <일부개정 2022.8.18.>

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 2020.4.29.>

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04.29.>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 2020.4.29.>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 2020.4.29.>

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호번호변경 2020.4.29.>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2018.8.29., 2024.3.29. 일부개정>

⑤ 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원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제6항에서 서약한 내용과 다르게 관련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2018.8.29. 신설×2022.8.18. 단서 신설×2024.3.29. 일부개정>

⑥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 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추천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018.8.29. 신설×2022.8.18., 2024.3.29 일부개정>

⑦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자의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원장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화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8.8.29. 신설×2024.3.29. 일부개정>

⑧ 원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제15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에 근거한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2018.8.29.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

⑨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8.29.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022.8.18., 2024.3.29. 일부개정>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⑩ 제9항의 파면 또는 해임 안이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된 경우 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20.4.29. 일부개정>

⑪ 원장이 제9항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2018.8.29. 신설>

⑫ 이사장은 원장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위해제 한다.<2018.8.29. 신설>

⑬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사전협의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8.29. 호번호변경>

1.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비용(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원장 임기의 잔여 연수에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잔여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는 2년을 적용한다.<2022.8.18. 일부개정>

⑭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정책기획단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8.8.29.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

⑮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테크노파크 운영방향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과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8.29.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2022.8.18. 일부개정>

⑯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부장관 추천 : 2인
2. 이사장 추천 : 2인
3. 지역 경제단체장 중 울산광역시장이 지명하는 자
4. 중소기업부 담당과장
5.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6. 울산광역시 담당과장<2020.4.29., 2022.8.18., 2024.3.29. 일부개정>

⑰ 제1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2. 공무원 (다만,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제외한다)
3. 지방의회 의원<2018.8.29. 호번호변경 및 일부개정><2022.8.18., 2024.3.29. 일부개정>

⑱ 기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2018.8.29 호번호변경>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8.18. 일부개정>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2022.8.18. 신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2022.8.18. 일부개정>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직제)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조직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각 직위(직급)별 구성원 수

제14조(구성원) ① 법인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한다.

② 경영진은 원장과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직속부서장은 제28조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2018.8.29. 일부개정>

③ 직원은 경영진이 아닌 부서장 및 부서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채용, 배치 및 이동, 보직, 승급,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8.29.,2021.7.26.,2022.8.18.>

④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단 또는 센터 단위 이상 업무의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한다.

⑤ 구성원이 파견·휴직·면직·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와 신규 사업에 따른 조직이 확대된 경우 법인은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신규채용은 법인 인사관리규정상의 파견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의 방법을 따른다.

⑥ 법인에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직위(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2022.8.18. 일부개정>

제15조(겸직 제한) ① 재단 구성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2022.8.18. 일부개정>

② 원장 및 법인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를 겸할 수 있다.

1. 원장 : 이사회회의 허가
2. 원장 이외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 원장의 허가<2022.8.18., 2024.3.29. 일부개정>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2018.8.29. 일부개정>
7. 직속부서장·부설기관장의 파면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
10. 원장의 보수에 대한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원장,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2024.3.29. 일부개정>

④ 원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부의 안건을 작성하며, 부의 안건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울산광역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2020.4.29., 2022.8.18. 일부개정>

⑤ 원장은 이사회 소집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0.04.29. 신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사회 개최 시 이사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2020.4.29. 항변호변경><2022.8.18. 일부개정><2024.3.29. 단서 삭제>

⑦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2.8.18. 신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 제1호 및 제6호(원장의 해임 또는 파면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8.29., 2024.3.29. 일부개정>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정관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면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이사회결의 제척사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이사장 내지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장 및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2조(의사록 등)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의사회 의결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사에게 의결사항 및 의사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직속부서 등

- 제23조(직속부서 등의 설치)** ① 원장의 직속부서로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및 연구소를 두며, 직할부서로 감사실, AI미래본부,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지산학협력추진본부, 경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8.,2021.7.26.,2023.12.21.,2024.12.27.,2026.3.27.>
- ② 원장은 별도의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건물 및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시 중앙행정기관이 출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출연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특정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속센터(직할부서)를 둘 수 있으며, 대학에서 출연한 경우, 출연대학에 대학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 ④ 직속부서 등의 사무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직할부서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법인은 부서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예산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2018.8.29. 일부개정>
- ⑥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 인력 비율은 현원의 30%이내, 관리직(경영진과 직할부서장)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긴급한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2020.04.29. 신설>

제24조(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지역R&D기획, TP경영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업무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선임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제25조(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단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2항의 일자리 정보 조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기업 종합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컨텍센터운영, 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지원, 기술거래, 기술투자촉진, 정책지정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연구소) ① 지역주력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해 연구소를 두며, 연구소는 해당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지원업무(연구장비지원, 분석, 조사, 시험, 시험생산 등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연구를 위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와 정밀화학산업분야 연구를 위한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를 두고, 필요시 연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각 연구소가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연구소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사항에 대하여도 연구소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27조(직할부서) ① 경영지원본부는 조직·인사, 홍보, 회계·계약, 시설관리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7.26.>

② 감사실은 내부 조직의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AI미래본부는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AI미래본부장은 수행하는 사업정보를 포함한 중요사항에 대해 기업지원담당자에게 보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는 협조결재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7.26.,2024.12.27.,2026.3.27.>

④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지원업무 (연구장비지원, 분석, 시험, 시험생산 등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 지원업무)를 수행한다.<2023.12.21. 신설>

⑤ 지산학협력추진본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수행, 지산학 연계 및 협력, 대학 및 인재 혁신 업무 등을 수행한다.<2023.12.21. 신설>

제28조(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 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며 상근이어야 한다.<2018.8.29., 2022.8.18. 일부개정>

1.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은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2022.8.18. 신설>
 2. 직속부서장(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제외)과 부설기관장 중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직책은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2022.8.18.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속부서장과 부설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2022.8.18. 신설>
- ②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임용조건은 3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원장은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부서장추천위원회(연구소장 및 부설기관장은 제 30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장의 추천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2018.8.29. 일부개정×2022.8.18. 일부개정 및 항번호변경>
- ③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2022.8.18. 항번호변경>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2022.8.18. 일부개정>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성과평가결과 4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
 4.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④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
1.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재임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2022.8.18. 일부개정>
 2. 성과평가결과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
- ⑤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봉과 기타 대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24.3.29. 일부개정>
- ⑥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원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직속부서장과 부설기관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2018.8.29. 일부개정>
- ⑦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평가를 생략한다.
- ⑧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청렴의무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경영진 보수 및 직

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18.8.29. 일부개정>

⑨ 부서장추천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하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2018.8.29. 개정><2022.8.18. 일부개정>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2018.8.29. 일부개정>
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울산광역시의 담당과장,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과장 <2018.8.29. 2022.8.18. 일부개정>

4. 원장이 추천하는 1인<2022.8.18.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직원(직속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예외로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2022.8.18., 2024.3.29. 일부개정>

1.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조직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자

제5장 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주요사업 기획 등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 정책기획단장, 직속부서장 중 2인,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및 광역지자체 소관업무 담당과장, 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원장은 관련 전문 인력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2020.4.29. 일부개정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원장은 위원회 소집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계약직의 채용을 위한 경우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수는 제외)이 아닌 외부위원 3인과 정책기획단장, 해당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022.8.18. 일부개정>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수는 제외)이 아닌 외부위원 5인, 정책기획단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한다.<2022.8.18. 일부개정>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인사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인사위원회 및 인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2022.8.18. 일부개정>

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2.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임용 심의
4. 경영진·직원의 징계의결 및 포상심의
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6.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의 기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 ⑦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 예산, 자산 및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설립 후 법인이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시설임대·장비활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수익금 적립의 범위 및 절차는 제36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1과 같다.
 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 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기타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4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5조(수익금의 관리) ①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익금 사용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 ③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재정자립화를 위한 신규인프라 구축 및 기존 인프라 관리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세부사용계획을 산업기술단지 회계처리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⑤ 사용하고 남은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매년 결산승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일괄 반영한다.
- ⑥ 기존 적립된 수익금도 기본재산에 반영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나 자금의 차입(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의 원칙)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복식부기)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법인은 다른 법에 근거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③ 예산회계 규정 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다.
- ④ 예산 및 회계는 본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9조(예산집행)** ①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울산페이 등)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2020.4.29. 일부개정>
- ② 제반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법인의 모든 카드는 클린카드의 기능을 부여하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2.8.18. 일부개정>
- ③ 법인은 경비를 집행할 때 정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전자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석수당, 출장경비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0.4.29. 일부개정>
- ④ 법인은 법인의 출자회사와 위·수탁협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19.7.9.>

제4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등
- ② 원장은 예산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기준」 및 법인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 다만,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할 수 있다.<2022.8.18. 일부개정>

제42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3.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제43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당해연도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2022.8.18. 일부개정>

② 법인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고유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인 예산·결산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44조(상근직 임원의 보수 결정과 제한) 법인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며,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45조(재산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46조(정관의 변경) 법인은 승인받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2.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제47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

견 직원” 이라 한다)은 별도의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8조(검사·감사) ① 중소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은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 및 감사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기관의 운영에 대해 감사(특별감사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감사자, 감사목적, 감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2018.8.29.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인에 대한 외부 합동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감사시기와 방법은 울산광역시와 중소기업부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48조의1(경영실적평가) 법인의 경영실적평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2020.04.29. 신설>

제49조(공시의무) 법인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공시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2022.8.18. 일부개정>
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 7일까지)
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다음해 3월말까지)

제5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홈페이지,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목적 가진 다른 비영리법

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②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규정) ① 법인의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중요 규정은 원장이 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중요 규정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준수 및 준용) ① 법인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있더라도, 「산업기술단지법」 제2조의2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0.04.29. 신설>

② 법인은 「산업기술단지법」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운영 및 법이 정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다른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2020.04.29. 신설>

③ 법인은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2020.4.29. 일부개정 및 항번호변경>

부 칙<개정 2011. 6. 23>

(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등의 개정) 정관개정에 따라 제규정, 규칙, 지침의 제명 및 내용 중 “자동차기술지원단”은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로, “정밀화학사업단”은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로 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8항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임기 중인 원장에게도 적용되며, 이 기준 시행 이후 선임된 원장의 계약서에 제9조제8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개정) 부서장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 “특화센터장” 을 “연구소장” 로, 경영진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 제3조의 “특화센터장” 을 “연구소장” 로 한다.

부 칙<개정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규칙의 개정) 규정관리규정, 이사회규정, 직제규정, 원장추천위원회규정,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감사규정, 경영진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 재무회계규칙, 회의수당지급규칙 중 “산업통상자원부” 를 “중소벤처기업부” 로 한다.

부 칙<개정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8.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원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 제2조(타 규정 개정)** ① 직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항을 “직속부서장은 부서장추천위원회(연구소장 및 부설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로 하고 별표2의 “부서장” 을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로 한다.
- ② 원장추천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3호 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소장” 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로 하고 제7조 5항을 삭제한다.
- ③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직속부서장과 부설기관장” 을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로 제2조 2항을 “위원회는 부서장 후보를 복수로 원장에게 추천한다.” 로 같은 조 제3항의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을 “부서장” 로 제3조 1항을 “원장은 위원회를 부서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6인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단,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로 같은 조 1항 2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2인” 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로 같은 조 1항 3호의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을 추가한다.
- ④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을 “위원회는 관련부서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부서장은 복수의 후보자를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현 부서장을 선임한다.” 로 하고 같은 조 3항의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을 “부서장” 로 같은 조 4항의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을 “부서장” 로 같은 조 5항의 “제27조 제2항에 따른 현 직속부서장” 을 “제28조 3항에 따른 현 부서장” 로 한다.
- ⑤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3항의 “위원회는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기마다 실시하고(하반기는 결산이 종료된 후 차년도 3월 이내에 완료)하며, 그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을 “위원회는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결산이 종료된 후 차년도 3월 이내에 완료)하며, 그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로 한다.
- ⑥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직속부서장의 기본연봉은 원장과 직속부서장이 상호 협의” 을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원장과 상호 협의” 로 별표1의 “부서장” 을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로 한다.

부 칙<개정 2019.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 개정) 인사관리규칙 중 제17조 3항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간접고용근로자가 전환채용 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별도 수당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로 신설한다.

부 칙<개정 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3항에 대한 원장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이 정관 승인일 이후 선임된 원장부터 적용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 개정)①원장추천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3호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로 한다.

②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사용” 을 “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울산페이 등) 사용” 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5항에 의한 원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원장부터 적용

한다.

제2조(타 규정·규칙 개정)①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1개월 이상의 한시직원에 대하여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대체인력(병가·휴가·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임시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을 “사업시행자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1년 이내의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원의 인력, 출산·병가·휴가·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로 같은 조 2 “채용 예정 인원이 5인 이하일 때에는 15일 전까지” 를 “채용 예정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로 제42조 “개인 성과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를 추가하고 제90조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를 추가한다.

②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표준연봉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 70,000천원~90,000천원” 을 “100,000이하” 로 “원장 87,000천원~126,000천원” 을 “130,000천원 이하” 로 한다.

부 칙<개정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일부개정 2015.12.28.,2017.3.29.,2018.3.27.,2019.3.27.,2019.7.9.,2020.4.29.,2021.3.30.,
2022.3.28.,2022.8.18.,2022.12.22.,2023.3.29.,2024.3.29.,2025.3.26.,2025.12.22.2026.3.27.>

구분	금액(천원)				비고	
총계	130,545,394					
현금	14,944,494					
	토지	번호	지번	면적(㎡)	금액(천원)	취득 금액
		1	다운동 421-2	2,792.2	102,880	
		2	다운동 421	48,753.4	1,796,352	
		3	다운동 421-4	468.0	17,244	
		4	유곡동 890	3,792.0	139,719	
		5	다운동 408	28.0	1,032	
		6	다운동 408-4	16.0	590	
		7	다운동 408-5	104.0	3,832	
		8	다운동 430	613.0	22,586	
		9	다운동 411-3	132.0	4,950	
		10	온산읍 학남리 427-15	9,707.7	2,860,186	
		11	교동 138	5,516.9	4,130,247	
		12	두왕동 762-4	6,610.0	2,526,435	
		13	두왕동 762-9	8,634.0	3,606,503	
14	다운동 425-2	49.0	1,642			
	소계		87,216.2	15,214,198		
건물	명칭	지번	규모	면적(㎡)	금액(천원)	취득 금액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북구 매곡산업로 35	본관동:3층,지하1층 신뢰동:2층,지하1층	16,491	19,830,924	
	자동차안전시험센터	북구 매곡산업로 77	A동:1층, B동:2층,1층(부속) C동:1층, E동:1층,2층 F동:1층,2층, G동:1층	8,176	6,265,831	
	정밀화학지원센터	중구 증가로 15	본부동:4층 시험생산동:3층,1층(부속)	10,609	13,040,428	
	화학시험연구원	중구 증가로 15	화학동:2층,지하1층 별관:2층,1층(부속)	3,915	5,762,401	
	협업혁신관	북구 매곡산업로 35	A동:2층 B동:2층,지하1층	8,039	4,257,510	
	테크노파크본관,AB동	중구 증가로 15	본부동:4층,지하1층 혁신A동:5층 혁신B동:6층,지하1층	17,994	21,360,770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온산읍 회화3길 38	지하1층, 지상5층	1,648	3,176,569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그린카기술센터	중구 증가로 362-11	과학기술(지하3층,지상7층) 그린카(지하3층,지상11층)	14,419	19,439,609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연구소동:지하1층, 지상3층 플랫폼A동:지상1층 기계실:지상1층 수소공급시설:지상1층 창고동:지상1층	1,681	3,986,729	
	부속건물 (울산그린카기술센터)	중구 증가로 362-11	실험실:지상1층 창고동:지상1층	80	633,769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남구 두왕동 762-9	연구소동:4층 옥탑:5층	872	2,183,162	
	관사	중구 우정2길 45	우정아이파크 105동 601호	125	449,000	
	소계		84,049	100,386,702		

※ 총계는 현금, 토지 및 건물의 금액의 합을 말함.